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7조의2 및 제3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7조의2(지급정지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금융회사”라 한다)에 지급정지를 요구(이하 이 조에서 “지급정지 요구”라 한다)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②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(元帳)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426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공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.

1. 지급정지의 기간,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
2. 지급정지와 관련된 예금종별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
3. 이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

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.

⑤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지급정지 요구를 하기 전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가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압류·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

나.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

다. 질권이 설정된 경우

2.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

3. 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(지급정지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)에 이체된 사실을 명의인이 소명하는 경우

⑥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금융회사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⑦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적은 문서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2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2.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⑨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, 연장 기간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⑩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,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금융회사는 인용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⑪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대상, 요건, 절차,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77조의3(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에 따라 제한명령(이하 “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
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1.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

가.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

1)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

2)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,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(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)

3)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

4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

나.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

1) 공매도 주문금액

2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

다.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

- 1) 공매도 주문금액
- 2)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)
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
- 3)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
- 4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
졌는지 여부

2.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
을 감면할 것

- 가.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나.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- 다.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
- 라.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,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
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

② 금융위원회는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과 제한
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
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·처
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.

1.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
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
2.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
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. 다

만,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기소중지 등 수사·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

나.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·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(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)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행사
2. 제198조제1호, 제2호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
3.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

가. 합병

나. 분할 또는 분할합병

다.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

라.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·양도

5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

6.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·매도

7. 제196조제1호 각 목 외의 채무증권의 매수·매도

8.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은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

④ 거래제한대상자(법 제42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거래제한대상자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2. 해당 거래제한대상자의 실명확인증표

⑤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

⑥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

2.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, 내용 및 관련 계좌정보
3.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거부 또는 처리결과
4.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
⑧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된 주권상장법인등(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
2.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

⑨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려는 자가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⑩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 :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및 처분기간
2.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: 이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

⑪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·기준, 거래제한대상자

통보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0호의3”을 “제40호의5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제40호의4부터 제40호의6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0호의2 및 제4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의2.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

40의3.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

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호 및 제9호”를 “제8호, 제9호 및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에 필요한 통보의 접수,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에 관한 통보의 접수 및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의 통보에 관한 사무

제387조의2제10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에 필요한 통보의 접수,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

5. 제3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

⑱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접수, 지급정지 조치,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또는 공개 및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
2. 제377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, 지급정지 해제 결정의 접수 및 해당 명의인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

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통보의 접수
2.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

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·재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별표 5 제1호의30부터 제1호의3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0. 법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,

-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
- 1의31. 법 제426조의2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통지를 유예하지 아니하거나,
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
- 1의32.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
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거나, 그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
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

별표 20 제103호의2 및 제10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
표 제159호 및 제160호를 각각 제160호 및 제161호로 하며, 같은 표에
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161호(종전의 제160호)
중 “제108호까지”를 “제103호까지, 제103호의2, 제103호의3, 제104호
부터 제108호까지”로, “제159호”를 “제160호”로 한다.

103의2.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관
련 통지의 접수

103의3. 법 제426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

- 가. 법 제426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
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통보의 접수
나.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
반한 혐의에 대한 거래소의 통보의 접수

159. 제377조의3에 따른 각 목의 권한

- 가.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

위반한 혐의에 대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통보의 접수

나. 제377조의3제9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의 구축·운영

별표 20의2 마목 단서 중 “위반행위자별로 각자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”를 “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”로 한다.

별표 22 제2호머목 및 베틀목을 각각 처목 및 켜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머목부터 켜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며.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48호의2	10,000
벼. 법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9조 제3항제20호	1,800
셔.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48호의3 및 제48호의4	10,000
여. 법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9조 제3항제21호	1,800
저. 법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	법 제449조	10,000

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제1항제48호의5 및 제48호의6	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한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3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77조의2(지급정지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금융회사”라 한다)에 지급정지를 요구(이하 이 조에서 “지급정지 요구”라 한다)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</u> <u>②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(元帳)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426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공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.</u> <u>1. 지급정지의 기간, 사유 및 금</u>

액 등에 관한 사항

2. 지급정지와 관련된 예금종별
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
사항

3. 이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
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

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4호에
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
는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
월이 경과한 날에 지급정지가
해제되는 것으로 본다.

⑤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지급정지 요구를 하기 전 해
당 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
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유가 발생한 경우

가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압
류·가압류 또는 가처분의
명령이 집행된 경우

나.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체
납절차가 개시된 경우

다. 질권이 설정된 경우

2.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

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
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

3. 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
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
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
(지급정지 요구를 받은 금융
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말한
다)에 이체된 사실을 명의인
이 소명하는 경우

⑥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된 계
좌에 대하여 법 제426조의2제7
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
전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
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회사에
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금
융회사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
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
야 한다.

⑦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
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
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
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
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

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적은 문서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2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2.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⑨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, 연장 기간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⑩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

<신 설>

있는 경우,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금융회사는 인용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⑪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대상, 요건, 절차,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77조의3(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)

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에 따라 제한명령(이하 “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1.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

가.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

1)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

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

익을 포함한다) 또는 이

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

2) 법 제173조의2제2항에

따른 과생상품시장에서

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

수 있는 정보, 미공개중

요정보, 미공개정보 또는

법 제178조의2제1항제2

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

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

(법 제176조 및 제178조

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

제외한다)

3)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

가격에 미치는 영향

4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

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

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

부

나.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

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

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

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

려하여 판단할 것

1) 공매도 주문금액

2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
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
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
분

다.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
정된 위반행위의 경우: 위
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
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
려하여 판단할 것

1) 공매도 주문금액

2)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
로 얻은 이익(미실현이익
을 포함한다) 또는 이로
인하여 회피한 손실액

3)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
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
치는 영향

4)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
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
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
분

2.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제한기간을 감면할 것

가.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

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
경우

나.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
없이 시정한 경우

다.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
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

라.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,
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
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
거나 없는 경우

② 금융위원회는 제한명령을 하
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과
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
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
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
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
대한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한
후 통지해야 한다.

1.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
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
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
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

2.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
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
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
여도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

하지 못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
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
·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
명령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
는 제외한다.

가. 기소중지 등 수사·처분
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
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

나.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하
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
하는 것이 수사·처분결과
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
우

③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
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
따른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
(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
유를 말한다)하고 있으면서
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
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
또는 권리행사

2. 제198조제1호, 제2호 및 제7
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거래

3.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
금융투자상품의 취득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유로 하는 금융투자
상품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
처분

가. 합병

나. 분할 또는 분할합병

다.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
포괄적 이전

라.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
· 양도

5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
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
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
기 위하여 하는 금융투자상품
의 매도

6.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
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
증권의 매수·매도

7. 제196조제1호 각 목 외의 채
무증권의 매수·매도

8.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
위 소지가 낮은 거래로서 금
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거래

④ 거래제한대상자(법 제426조
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
른 거래제한대상자를 말한다.
이하 같다)가 이 조 제3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
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
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제한대
상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
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거래제한대상자의 계좌
를 통한 거래가 이 조 제3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
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2. 해당 거래제한대상자의 실명
확인증표

⑤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
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법인”이란 「금융회사의 지
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
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회사를 말한다.

⑥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
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
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

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
2.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, 내용 및 관련 계좌 정보
3.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거부 또는 처리결과
4.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
⑧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된 주권상장법인등(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의

인적사항

2.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

⑨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려는 자가 임원선임·재임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⑩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 :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및 처분기간

2.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·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: 이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

⑪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·기준,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·절차 및

제387조의2(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) ① 금융위원회(제57조,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증권선물위원회(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가목2)의 정보(이하 “개인식별번호”라 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21호의2 및 제40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

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0호의5

<신 설>

<신 설>

40의2. ~ 40의4. (생 략)

41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(제7호의2,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9. (생 략)

<신 설>

40의2. 법 제426조의2에 따른
지급정지에 관한 사무

40의3. 법 제426조의3에 따른
제한명령에 관한 사무

40의4. ~ 40의6. (현행 제40호
의2부터 제40호의4까지와 같
음)

41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제8호, 제9호 및 제10호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
5항까지에 따른 불공정거래행
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에 필요
한 통보의 접수, 거래제한대상
자의 거래 요청사실 및 그 거
부 또는 처리결과에 관한 통
보의 접수 및 금융투자업자가
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

⑤ ~ ⑨ (생략)

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⑪ ~ ⑮ (생략)

<16>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17>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

의 통보에 관한 사무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에 필요한 통보의 접수,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

5. 제3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

⑪ ~ ⑮ (현행과 같음)

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

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⑱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접수, 지급정지 조치,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또는 공개 및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

2. 제377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, 지급정지 해제 결정의 접수 및 해당 명의인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

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

<신 설>

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
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
다.

1.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른
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통보
의 접수

2.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
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
상품의 거래 요청 사실의 통
보에 관한 사무

㉔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
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
2호에 따라 임원선임·재임제한
대상자의 선임·재임 여부를 확
인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불가
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
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